

자 료

노동부, 동절기 대형 산업재해예방
대책수립 시행 —————(편집실)

노동부, 동절기 대형 산업재해예방 대책 수립 시행

노동부는 동절기 및 연말연시에 특별히 많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집중분석하여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계절적, 주기적 대형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재해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킴은 물론 재해복구 작업의 신속, 안전을 기하기 위해 동절기 및 연말연시 대형 산업재해예방대책을 각 노동부지방사무소 및 관계부처 단체에 시달하고 관내사업장에 홍보, 지도토록 하였다.

그 세부 지침으로는

○ 각 지방사무소에서는 동절기 ('85년 11월 - 12월, '86년 1~2월, 4개월)에 재해가 많이 발생한 업종을 중심으로 취약사업장을 선정하고

○ 취약사업장에 대해 재해다발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여 통보하며

○ 기술적 전문적 진단을 요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진단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또는 건설안전진단기관인 한국기술사회 건설안전전문분회에 진단을 의뢰토록 하고 기타 사업장은 지방사무소의 직접 현지점검 또는 사업장의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였다.

노동부가 수립한 동절기 및 연말연시 주요재해유형 및 대책은 다음과 같다.

주요재해 유형	대 책	관련업체또는 사 업	주요재해 유형	대 책	관련업체또는 사 업
1. 대형화재 사고	가. 춤다고 화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 용단, 가열작업방지 나. 신나등 유기용제 사용 작업부서에 화기사용 절대금지 다. 각종 난방용 기구의 사용중 주유금지 라. 보일러, 압력용기등 난방용 기계 기구의 계기 및 기능점검 확인철저 마. 건조설비, 화학설비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자체점검자찰제 바. 목재품, 분진등 가연성 물질에 대한 화기접근 금지 사. 전기누전 방지를 위한 누전차단기 설치 아. 소방설비 점검 및 방화훈련강화 자. 방화관리자 수시 순찰 회수증가	기방제조업, 화학제품 또는 목재품 제조업	혹한시 봉파, 도끼 파열 사고	의 운전장지시 내부에 잔존하는 액체류는 뽑아내고 건식보관의무화 다. 옥내 상수도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 대책 라. 강풍 또는 폭설시 2m이상의 고소에서 작업금지 마. 강풍 또는 폭설시 별도, 집재등 별목 작업금지 바. 강풍에 대비한 각종 가설물 철거 사. 폭설시 작업장내 경사통로에 조치 할 모래 또는 제설제 준비사용	
2. 강풍, 폭설 및 및	가. 동절기에는 가능한한 사업장 중·개축등 각종 공사시공 금지 나. 각종 벨브, 콙크, 호우스 및 배관등	건설업, 별목업, 수도업	3. 연탄가스 중독 독사고	가. 기숙사등 취침용 바닥에 연탄가스 가스며 나오지 않도록 균열여부점검. 나. 연탄가스가 균열된 벽 또는 창문사 이를 통해 침실에 들어오지 않도록 함. 다. 연탄에 불을 차운 불일때 일산화탄	연탄사용기숙사 보유사업체 및 유해 가스취급업체

주요재해 유형	대 책	관련업체또는 사업
	소가 다량 배출되므로 취침시간에 연탄불을 붙이는 일이 없도록 할것. 라. 연탄가스 경보기를 구입하여 취침 실내 부착.	
4. 전기사 용증 가에 따른 전기합 선 또는 누전사고	가.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된 부분은 새로운 것으로 교체 나. 고장난 휴우즈, 차단기 및 스위치 교체 다. 전기콘센트에 과도한 전하를 부하시킴으로 인한 전기누전방지 라. 한진으로부터 사용허가 받은 용량 이상의 전기용량 사용금지. 마. 전기화재 소화기 배치 바. 전기안전담당자의 수시점검 및 순찰강화 사. 옥외 개폐기는 눈등이 쌓이지 않도록 덮개등 설치	전기설비 사용업체
5. 근로자 의 동상 또는 호흡기 질환이 환	가. 따뜻한 음료수 제공 나. 방한복, 방한화 지급 다. 김기등 호흡기 질환 이완시 신속히 치료 라. 옥외 작업장의 방폭벽 설치 마. 적절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동휴게시기에 근로자가 몸을 녹일수 있는 시설설치	옥외 작업장이 있는 사업체
6. 옥내작업장 소음수준증가	가. 창문, 출입문등을 완전 밀폐시킴으로 인한 소음수준이 허용수준(90데시벨)이상으로 초과되는지 여부를 측정 나. 소음수준이 허용치 이상인 경우 소음원을 별도로 격리시키는 등소음 감소조치 다. 소음수준을 허용치 이하로 개선이 불가능 할때에는 근로자에게 귀마개등 보호구를 지급	절단기등 소음 기계기구 사용업체
7. 분진, 흙, 미스트에 의한 호흡기장애	가. 분진, 흙, 미스트 발생원에 반드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 나. 규칙적으로 창문등을 열어 환기 또는 통풍을 실시 다. 밀폐된 공간내에서의 도장 작업금지 라. 방진마스크등 보호구를 지급 착용	연마작업, 용접, 용도작업
8. 특장화학물질,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중독	가. 유해물질 발산원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나. 환풍기등 전체 환경장치 설치가동 다. 유기용제등 유해물질을 넣었던 빈 용기는 밀폐하거나 옥외의 일정한 장소에 폐기처리 라. 호오스 마스크등 보호구 지급사용 마. 유해물질의 명칭, 취급상 주의사항, 인체에 미치는 영향등을 작업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표시	화학제품 제조업

주요재해 유형	대 책	관련업체또는 사업
	바.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강화	
9. 강풍 및 동결에 의한 추락, 전도 또는 비래재해	가. 옥외의 가설통로에는 강풍에 의한 전도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75cm 높이 이상의 손잡이 및 방풍벽설치 나. 수분을 많이 취급하는는 실내통로 및 계단에서 미끄럼 방지판 설치 다. 옥외 콘베이어에 의거 운반하는 작업시 콘베이어 밑에는 운반물의 비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 설치 라. 경사면이 급하거나 지하수, 표면수 등에 의한 빙결이 심한 작업장에는 제설제 준비사용 및 손잡이 설치	선판건조 수리 및 해체작업, 식품가공 또는 유제품 제조업
10. 가스·유류등에 의한 폭발사고	가. 가스, 위험물, 유해물 저장설비의 벨브, 콕크 호오스 및 배관등의 자체점검 강화로 누출방지 나. 가스등 화학설비 취급장소에 화학설유의 복 촉의등에 따른 정전기 발생방지 다. 가스 및 유해 위험물의 우발적인 방출시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포집시설설치 라. 유해위험물 취급 작업장의 규칙적인 환기 및 환풍	화학제품 제조업, 가스 및 유류취급업
11. 연장근로자 등에 의한 피로 축적으로 무리한 동작에 의한 재해	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한 적정 근로시간 준수로 무리한 연장 근로금지 나.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의한 휴게시간 엄수 다. 작업시작전 위험예지훈련 및 안전교육철저 다. 각종 보호구 착용여부 수시점검 마. 중간휴게시간을 이용한 안전제일 프로그램 안내방송 실시	전 사업장
12. 연말연시연휴등으로 인한 안전의식 저하로 근로자 부주의 재해 증가	가. 작업시작전 작업내용에 대한 작업방법, 작업량등에 대한 교육실시 나. 근로자 귀성편의 제공시 운전기사 안전교육 실시 다. 작업중 음주 흡연금지 라. 대형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일제확인 점검 마. 연말연시 연휴시 당직자의 안전순찰 철저 지시 바. 옥외 및 한랭부서 근로자에 대한 방한복, 방한화, 방한모, 방한장갑 등 체온보호의 지급	전 사업장